

▣ 정관 일부개정 신·구 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 (임원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장 1인 2. 부이사장 2인 3. 이사 20인 이내(이사장, 부이사장 포함) 4. 감사 2인 5. 생략 	<p>제19조 (임원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장 1인 2. 부이사장 2인 <u>이내</u> 3. 이사 <u>12인 이내</u>(이사장, 부이사장 포함) 4. 감사 2인 <u>이내</u> 5. 생략
<p>제20조 (임원의 선출) 생략</p> <p>1.~6. 생략</p>	<p>제20조 (임원의 선출)</p> <p>1.~6. 생략</p> <p>7. <u>대의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. 단, 전체 이사 중 겸직이사는 1/3 이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<p>제21조 (임원의 직무) ①~②생략</p> <p>③ 이사장, 부이사장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른다.</p> <p>④~⑥ 생략</p>	<p>제21조 (임원의 직무) ①~②생략</p> <p>③ <u>항 삭제</u></p> <p>④~⑥ 생략</p>
<p>제22조 (임원의 임기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3. 생략 4.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. 	<p>제22조 (임원의 임기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3. 생략 4. 임원 임기 만료 <u>시 후임 임원 선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. 단, 이사장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, 이사의 순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.</u> 5. <u>이사장, 부이사장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를 선출한다.</u>
<p>제23조 (임원의 보선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 생략 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	<p>제23조 (임원의 보선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 생략 3. <u>삭제</u>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 (임원의 불신임) 임원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.</p> <p>1.~2. 생략</p> <p>3. 법규위반으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</p>	<p>제25조 (임원의 불신임) <u>이사장 및 감사의 불신임은 총회에서 결정하며, 기타 임원중</u>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<u>이사회에서 재적이사</u> 2/3 이상의 출석과 <u>출석이사</u>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.</p> <p>1.~2. 생략</p> <p>3. 법규위반 및 기타 <u>행위로</u>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</p> <p>4. <u>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,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합법적으로 개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</u></p>
<p>제30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생략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</p> <p>3. 생략</p> <p>③ 전항 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통고를 하여야 하고, 기일내에 소집통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중 1인이 이를 소집하고 당해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.</p>	<p>제30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 생략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<u>이사 2/3 이상 의결로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</u></p> <p>3. 생략</p> <p>③ 전항 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통고를 <u>하고, 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.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하고 당해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.</u></p>
<p>제32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생략</p> <p>1.~2. 생략</p> <p>3. 비상근임원의 선출과 불신임</p> <p>4.~8. 생략</p>	<p>제32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생략</p> <p>1.~2. 생략</p> <p>3. <u>이사장, 감사 및</u> 비상근임원의 선출과 불신임</p> <p>4.~8. 생략</p>
<p>제33조 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③ 생략</p>	<p>제33조 (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<u>이사장은 총회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나,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</u></p> <p>③ 생략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5조 (총회의 특별결의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관의 변경 기본자산의 처분 협회의 해산, 합병, 분할 또는 휴업 	<p>제35조 (총회의 특별결의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관의 변경 기본자산의 처분 협회의 해산, 합병, 분할 또는 휴업 임원의 불신임
<p>제37조 (의결권 행사)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.</p>	<p>제37조 (의결권 행사) <u>총회의 의결권은 대의원 개최 총회 시에는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 전 회원 개최 총회시에는 회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 행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9조 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로서 구성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2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</p>	<p>제39조 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, <u>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/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<u>총회소집 청구가 있을 때</u> 개최한다.</p> <p>③ <u>감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41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생략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7. 생략 8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 	<p>제41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생략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7. 생략 8. <u>협회 명의의 중요 계약의 체결 및 변경, 해지 등</u> 9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
	<p>제42조 (선거관리위원회) <u>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</p>
<p>제42조 (자산) ~제49조 (청산)</p>	<p>제43조 (자산) ~제50조 (청산)</p>
<p>제50조 (규정의 제정) 본 협회는 이 정관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 (규정의 제정)</p> <p>본 협회는 <u>필요시 정관외 각종 규정을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</u>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</p>
<p>부 칙</p> <p>1.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(2025년 3월 21일)로부터 시행한다.</p>	

대구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

